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5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요건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및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부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가 50퍼센트 미만 변경되는 경우로 명시함. 다만, 이 경우에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 외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 다. 도시계획위원에서만 수행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심의 등을 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3)

- 라. 시가지경관지구 등에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 시설물 설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유로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46조)
- 마.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55조)
- 바. 자치구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안 제63조)
- 사. 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위원의 구성시에 시공동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3조의2)
- 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에 시 공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를 추가함(안 제64조)
- 자. 자치구에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정비함(안 별표 4)
 - 1) 특별계획구역 내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의 사무에서 제외함.
 - 2)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변경에 따른 차량 출입 불허 구간의 변경 및 건축물 권장용도의 변경을 자치구의 사무로 위임함.
 - 3)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결정 범위의 사무로 한정하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 결정이 수반되거나 시장의 건축허가, 시의 사업승인 및 건축심의 대상 등은 제외하도록 함.
 - 4) 자치구청장이 실효고시하는 대상을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도시계획 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으로 한정함.

5) 자치구에 위임하는 개발행위의 허가 및 준공 관련 사무에서 용도 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제외함.

차. 그 밖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인용조문 등을 정비함(안 제19조의3, 제54조 및 제61조)

- 1)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기부·채납 대상 시설을 기반시설에서 공공시설등(공공시설, 기반시설, 조례로 정하는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으로 변경함.
- 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대한 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어를 정비함.
- 3) 회의록 공개 방법에 열람 외에 사본 제공을 포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 4. 2.~4. 22.)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조성계획)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1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시공동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 또는 영 제4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토지소유자”를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해당 공동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를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기반시설”을 각각 “공공시설등”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3항”을 “영 제7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행자의 편의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제55조제11항”을 “제55조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영 제84조제5항제1호”를 “영 제84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5호”를 “영 제84조제6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제12항, 제15항, 제17항,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를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42조의2제2항”을 “영 제42조의3제2항”으로, “용적율 을”을 “용적률을”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열람의”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57조제2항, 제6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8조제1항”을 “구청장은 제68조제1항”으로, “필요한 경우 자치구”를 “자치구”로,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 중 “시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로 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사연구”를 “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별표 3 제1호나목1) 중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한다.

별표 4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단, 특별계획구역내에서 시장이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을 “다만, 특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설, 폐지를 포함한다)”를 “(신설, 폐지를 포함한다)과 그 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변경”으로 하며, 같은 호에 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물 권장용도의 변경

별표 4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결정이 수반되거나 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의 사업승인 대상과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제외)

별표 4 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4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서 정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를 “제21조제3항의 사무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토지 이용 및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④ (생략)</p> <p>제17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전에 지정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u>법 제11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u>에 자문을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u>시도시계획위원회</u>에 자문하려는 때에는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결과 및 개략적인 구역의 지정구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영 제2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p>	<p>-----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 ①----- ----- ----- ----- -----<u>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u>----- -----.</p> <p>②-----<u>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u>----- ----- -----</p> <p>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① ----- ----- ----- -----</p>

현행	개정안
<p>부분 후단에 따라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p>	<p>-----<u>해당 공동위원회</u>----- ----- -----.</p>
<p>②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함에 있어 <u>시 구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경우 동 위원회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할 수 있다.</p>	<p>② ----- ----- -----<u>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u>----- ----- ----- -----</p>
<p>제19조의3(대규모 시설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 제14호에 따른 관할 시·군·구 내 <u>기반시설</u>이 취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p>	<p>제19조의3(대규모 시설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① ----- ----- ----- -----<u>공공시설등</u>----- -----.</p>
<p>1. ~ 2. (생략)</p> <p>3. 1호 및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중 <u>기반시설</u>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u>시도시계획위원회</u>에서 인정하는 지역</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공공시설등</u>----- -----<u>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u>----- -----</p>

현행	개정안
<p>② 영 제42조의3제2항제14호에 따른 <u>기반시설</u>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③ 영 제42조의3제2항제15호에 따른 <u>기반시설</u> 설치내용, <u>기반시설</u>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 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u>기반시설</u>의 설치 제공 또는 <u>기반시설</u> 설치를 위한 비용 제공 등(이하 “공공기여”라 한다.)을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할 것.</p> <p>2. (생략)</p> <p>3. 공공기여 내용 중 <u>기반시설</u> 설치비용의 산정은 제19조의2(공공</p>	<p>② ----- -----<u>공공시설등</u>-----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 --<u>공공시설등</u> ----- <u>공공시설등</u> ----- ----- ----- -----.</p> <p>1. ----- ----- <u>공공시설등</u>-----<u>공공시설등</u> <u>설등</u>----- ----- ----- ----- ----- ----- -----</p> <p>2. (현행과 같음)</p> <p>3. -----<u>공공시설등</u>----- -----</p>

현행	개정안
<p>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방법을 적용한다.</p> <p>4. (생략)</p> <p>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u>영 제72조제3항</u>에 따라 시가지경관 지구·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조망가 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법」 제 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 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 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 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4. <u>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 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 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u></p> <p>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생략)</p>	<p>----- -----.</p> <p>4. (현행과 같음)</p> <p>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u>영 제72조제2항</u>-----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 정된 경우 또는 허가권자가 해 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때</u></p> <p>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다만, <u>제55조제11항</u>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 ----- -- <u>제55조제12항</u> ----- ----- -----.</p>
<p>⑧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영 제 84조제5항제1호</u>에 따른 건축물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⑧ ----- <u>영 제 84조제6항제1호</u> ----- ----- ----- ----- ----- -----.</p>
<p>⑨ ~ ⑩ (생략)</p>	<p>⑨ ~ ⑩ (현행과 같음)</p>
<p>⑪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u>영 제 84조제5항제5호</u>에 따라 녹지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⑪ ----- <u>영 제 84조제6항제5호</u> ----- ----- ----- -----.</p>
<p>1. (생략) 2. 「문화재보호법」 <u>제2조제2항</u>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생략)</p>	<p>1. (현행과 같음) 2. ----- <u>제2조제3항</u> ----- ----- <u>제4항</u> ----- 3. (현행과 같음)</p>
<p>⑫ 제1항제15호에도 불구하고 <u>영</u></p>	<p>⑫ ----- <u>영</u></p>

현행	개정안
<p>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용적률 이하)범위안에서 <u>시도시계획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p>	<p>----- -----<u>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u>----- -----</p>
<p>⑮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지에 「문화예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u>시도시계획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p>	<p>⑮ ----- ----- ----- ----- ----- ----- ----- ----- ----- ----- -----<u>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u>----- -----</p>
<p>⑯ (생략)</p>	<p>⑯ (현행과 같음)</p>
<p>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역사도심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u>시도시계획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p>	<p>⑰ ----- ----- ----- ----- ----- ----- ----- ----- ----- ----- -----<u>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u>-----</p>

현행	개정안
<p>해당 용적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p> <p>1. ~ 2. (생략)</p> <p>㉑ ~ ㉒ (생략)</p> <p>㉓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u>시도시계획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㉑ ~ ㉒ (현행과 같음)</p> <p>㉓ -----<u>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거나 시도시계획위원회의</u> -----</p> <p>-----</p>
<p>1. ~ 2. (생략)</p> <p>제61조(회의록) 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u>열람의</u> 방법으로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61조(회의록)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u>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u> -----</p>
<p>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제56조, <u>제57조제2항, 제6항부터</u> 제11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p>	<p>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u>제57조제4항</u>-----</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 <u>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생략)</p> <p>② 자문위원은 도시경관·도시설계·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와 문화·미래·역사·관광 등 인문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의원으로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제57조 제3항의 제1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u>시도시계획위원회</u>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다음 각 목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u>조사연구</u></p>	<p>② <u>구청장은 제68조제1항</u>----- -----<u>자치구</u>----- -----<u>운영하여</u> <u>야 한다.</u></p> <p>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u>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공동위원회</u>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64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조사연구 및 상정안건 검토</u></p>

현행	개정안
<p>가. ~ 라. (생략) <u><신설></u></p> <p>4. (생략)</p> <p>[별표 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p> <p>가. (생략)</p> <p>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1) <u>도시환경정비구역</u>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u>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u></p> <p>4.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 ----- ----- ----- ----- ----- ----- ----- -----.</p> <p>1) <u>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u> --- ----- ----- -----</p>

현행	개정안
<p>역</p> <p>2) ~ 5) (생략)</p> <p>[별표 4]</p> <p>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p> <p>1. ~ 3. (생략)</p> <p>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단, 특별계획구역내에서 시장이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은 제외한다).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자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p> <p>가. ~ 자. (생략)</p> <p>차.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장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한다)</p> <p>카 ~ 더. (생략)</p> <p><신설></p> <p>4의2.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p>	<p>-----</p> <p>2) ~ 5) (현행과 같음)</p> <p>[별표 4]</p> <p>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다</u> -----<u>만, 특별계획구역</u>----- ----- ----- ----- -----</p> <p>가. ~ 자. (현행과 같음)</p> <p>차. ----- ----- ----- -----<u>(신설, 폐지를 포함한다)과 그</u> -----<u>위치변경에 따른 차량출입 불허구</u> -----<u>간의 변경</u></p> <p>카. ~ 더. (현행과 같음)</p> <p>러. <u>건축물 권장용도의 변경</u></p> <p>4의2. <u>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u></p>

현행	개정안
<p><u>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 사업승인대상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u></p> <p>6. <u>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고시에 관한 사무.</u>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한다.</p> <p>가. (생략)</p> <p>나. <u>시장이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지구단위계획구역</u></p> <p>8. <u>개발행위의 허가 및 준공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조례에서 정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는 제외한다.)</u></p> <p>가. ~ 라. (생략)</p>	<p><u>위계획 결정 범위에서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무(용도지역·용도지구의 변경결정이 수반되거나 시장이 하는 건축허가, 시의 사업승인 대상과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외)</u></p> <p>6. <u>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u> ----- -----</p> <p>가. (현행과 같음)</p> <p><삭제></p> <p>8. ----- -----<u>제21조제3항의 사무</u>-----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따라 밀도완화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칭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계획과 정성훈(02-2133-8324)